

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

(제24조제1항·제25조제1항 및 제27조관련)

1.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및 헌법재판연구원 실무교육 필수 이수시간

계 급 \ 구 분	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	헌법재판연구원 실무교육 필수 이수시간
2급	10시간	-
3급		-
4급	20시간	-
5급	60시간	25시간
6급		35시간
7급		10시간

비고 :

가. 헌법재판연구원 실무교육 필수 이수시간은 연 단위 기준이 아닌, 해당 계급에서 산출 기준일까지 이수하여야 할 총 시간을 의미하며,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에 포함됨

나. 사무·사무운영·관리·보안·보건·보건운영직렬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10시간으로 하며, 헌법재판연구원 실무교육 필수 이수시간은 고려하지 않음

2.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사무처장이 정함